

# 미래교육혁신원 운영 규정

제정 2023. 11. 24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미래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 및 설립목적)** 미래교육혁신원(이하 “교육혁신원” 이라 한다)은 본교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교수·학습 역량강화, 교육성과관리와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, 비교과와 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그 밖에 학생 중심 미래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미래인재를 양성한다.

## 제2장 조직 및 업무

**제3조(조직 및 업무)** 교육혁신원의 조직은 교육혁신팀, 교수학습개발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, 원격교육개발센터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### 1. 교육혁신팀

- 가. 대학교육혁신 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나. 역량기반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 개선에 관한 사항
- 다. 교육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### 2. 교수학습개발센터

- 가.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- 나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- 라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마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바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- 사. 교내외 유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비교과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아.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자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### 3. 교육성과관리센터

가. 학생역량평가 관련 연구·개발 및 평가·환류 지원에 관한 사항

나. 핵심역량진단 계획, 운영, 환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다. 교육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라. 비교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마. 비교과 통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
바. 비교과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사. 전공능력평가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

아. 교육성과관리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자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### 4. 원격교육개발센터

가. 원격수업 개발, 운영, 관리 등 원격교육 질 관리에 관한 사항

나. 학습관리시스템(LMS)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다. e-러닝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라. 외부 기관과의 원격수업 공동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마. 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바. 시청각 기자재 관리 및 수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사.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아.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자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## 제3장 위원회

**제4조(위원회 구성)** ① 교육혁신원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수학습개발센터, 교육성과관리센터, 원격교육개발센터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재정 및 예·결산

**제5조(재정)** 교육혁신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
1. 교비회계 재원
2.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및 타 기관의 사업비 또는 연구비

**제6조(예·결산)** 교육혁신원의 예·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## 제5장 기타

**제7조(규정등의 제·개정)** ① 교육혁신원장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

② 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규정 등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제규정 기본규정」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
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**부칙**(기획예산팀-2472, 2023.11.24.)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